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31

발의연월일: 2021. 7. 15.

발 의 자: 강선우·홍성국·김성주

임종성 · 윤미향 · 이학영

윤준병 • 양이원영 • 허 영

서영교 · 최종윤 · 장혜영

변재일 • 이수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어, 특히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보호자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점자를 통해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세부 식품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3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 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 ·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등에 필요한 준비행 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식품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
	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
	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
	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
	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
	는 식품등에 시각·청각장애인
	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
	<u>성</u> ・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
	<u>시를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시각・청각장
	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
	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
	<u>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시각ㆍ청각장
	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
	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
	<u>나</u>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
	<u> 공・소분・수입・포장・보관・</u>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